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4. 9. 3.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경위

2004년 9월 3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전완수 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2004.3.25 조례제563호)으로 마포개발공사가 해산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신설된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분장사무와 일치시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북지도시위원회 소관중 마포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3호)

4. 개정근거

- 가.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2004.3.25 조례제563호) 제1조, 제27조 등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2004.7.28 조례제569호) 제5조, 제6조 등

5.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6. 예산조치 : 필요없음

7. 기타사항 : 산·구 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라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중 “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를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 마포개발공사”를 “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생략) ②(생략) 1.~ 2.(생략) 3. 복지도시위원회 가.~ 다.(생략) <u>라. 마포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u>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2.(현행과 같음) 3. 복지도시위원회 가.~ 다.(현행과 같음) <u>(삭제)</u>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04. 9. 1 .

발 의 자 : 전완수 위원외 1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2004.3.25 조례제563호)으로 마포개발공사가 해산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신설된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분장사무와 일치시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북지도시위원회 소관중 마포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3호)

3. 개정근거

가.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2004.3.25 조례제563호)

제1조, 제27조 등

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2004.7.28 조례제569호) 제5조, 제6조 등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라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중 “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를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 마포개발공사” 를 “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으로 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생략) ②(생략) 1.~ 2.(생략) 3. 복지도시위원회 가.~ 다.(생략) <u>라. 마포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u>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2.(현행과 같음) 3. 복지도시위원회 가.~ 다.(현행과 같음) <u>(삭제)</u>